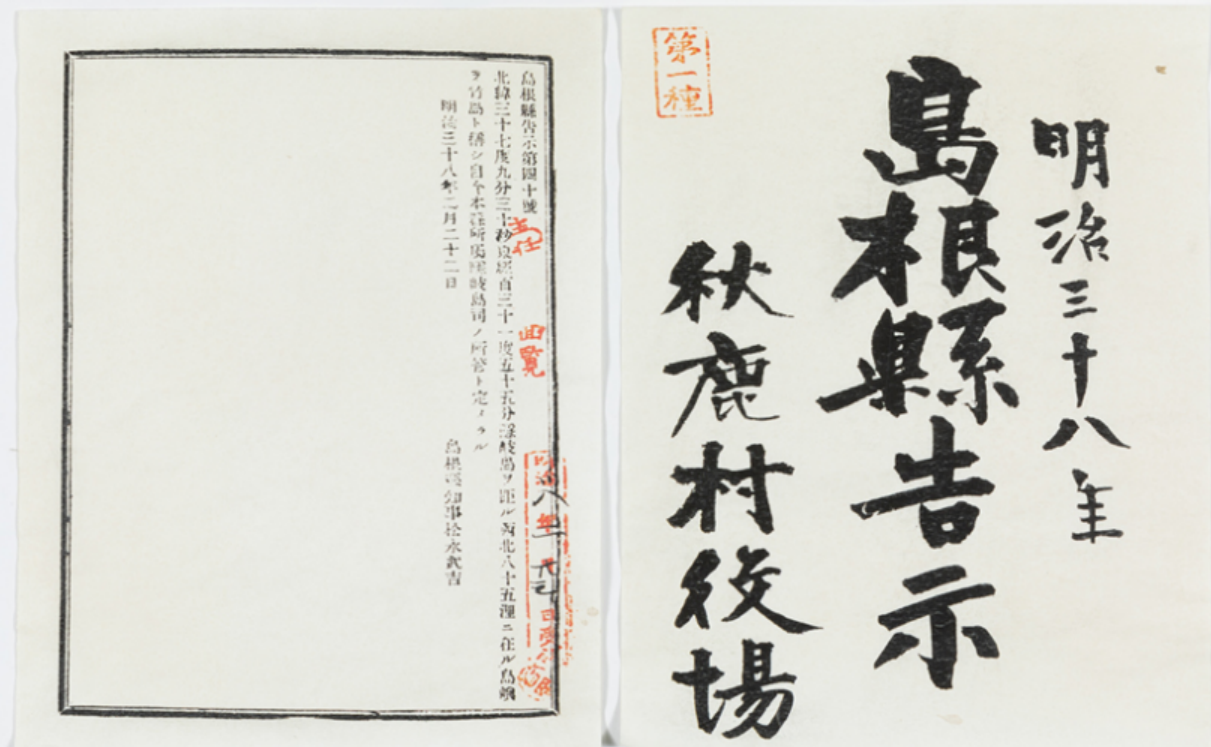


일본은 왜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



"1905년 2월 22일자로 북위 37도9분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 관할로 정한다."

일본의 주장은 틀렸다!

'불법문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왜 불법문서인가

첫째, 일본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작성된 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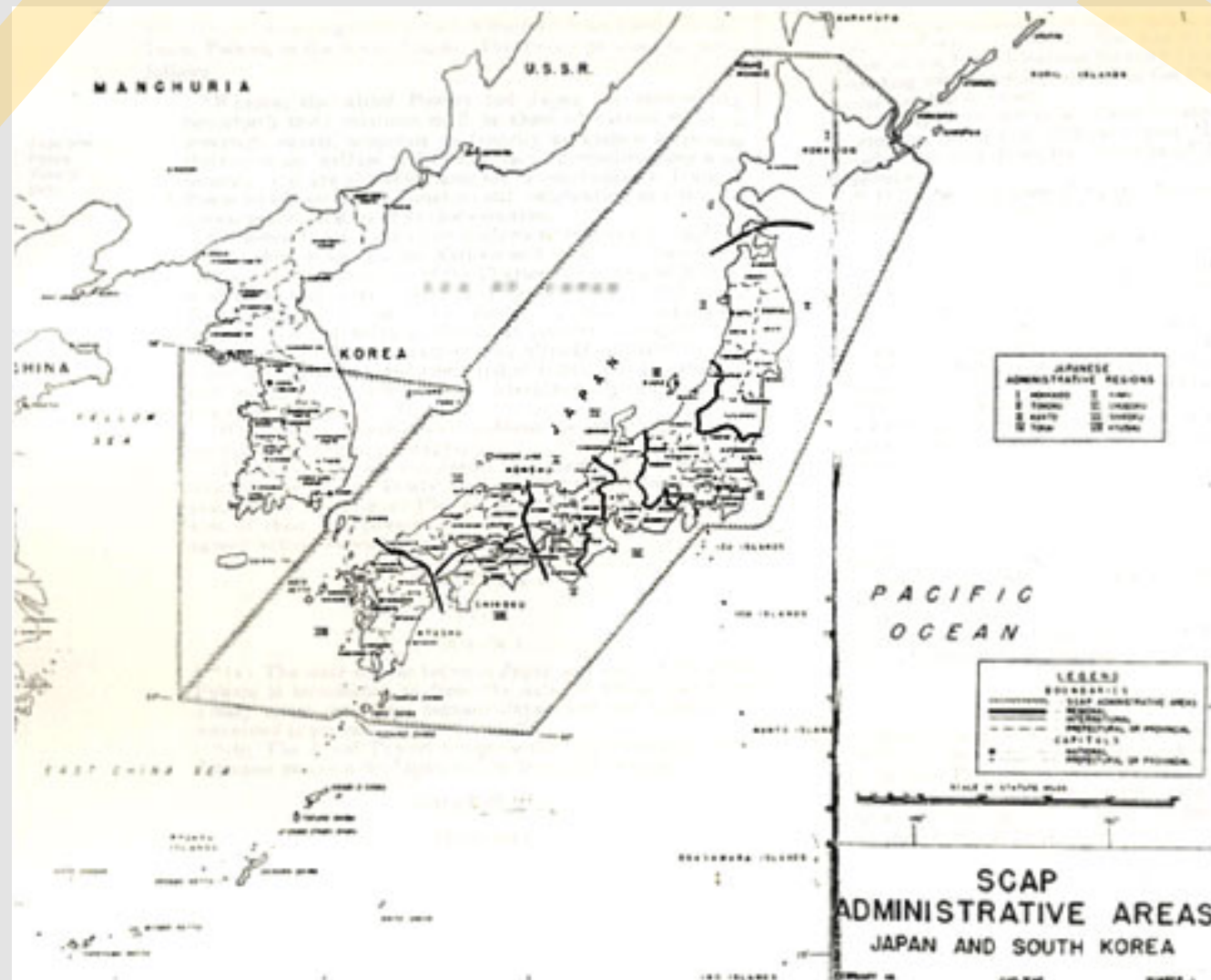
둘째, 영토편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편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한제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셋째, 국제법적 측면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문서다.

일본의 통치권 행사 영역에서 제외된 독도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

동 각서는 제3항에서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 큐슈, 홋카이도, 시코쿠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 곳의 소도서"라고 하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누구의 땅도 아닌 독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한국의 3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943년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SCAPIN 제677호 등에 나타난 연합국들의 의사를 감안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오기섬에서 독도까지 거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약 70km 더 가깝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